

국내시장복귀계좌(RIA) 설명서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주의] 고객님의께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I. 핵심(요약)설명서

- 이 핵심(요약)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설명서 본문 참조)

▣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구분	국내시장복귀계좌(RIA)	일반위탁계좌
특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객님의이 보유하신 해외주식 매도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1년 이상 인출 없이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계좌	국내외 유가증권, 금융상품 등 매매를 위해 설정한 계좌
해외주식 가능여부	매도 가능, 매수 불가	가능(해외증권투자신청 시)
국내주식 가능여부	제한적 가능(DR 제외)	가능

▣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 발생 가능한 불이익

- 이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주식거래 시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매매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당주식 발행회사의 부도, 영업정지 등 감독기관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일시 거래정지 또는 거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 계좌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이 원화로 자동환전 되므로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 매도자금이 결제되는 날 원화로 자동환전되며, 환전된 날을 납입일로 합니다. 해당 납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인출이 가능하며, 납입 1년 내 납입금액 인출이 있을 시 전액해지로 간주되어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공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6.01.01부터 '26.12.31까지 국내시장복귀계좌 외 계좌에서의 페널티 상품(해외주식 및 해외주식대체자산)의 순매수 금액에 비례하여 세제혜택이 축소되며, 해외주식 등² 순매수금액에 따라 국내시장복귀계좌의 양도소득 공제금액이 없을 수 있으니 매매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6년 한해동안 상속 및 증여로 페널티 상품(해외주식 및 해외주식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취득분은 해외주식, 해외주식대체자산 순매수 내역에 포함됩니다. 상속증여로 취득한 해외주식 등의 가액은 상속증여세법상 상속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되니 이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국내시장복귀계좌 외 계좌: 일반위탁계좌, 연금저축계좌, ISA계좌, IRP계좌, DC계좌, 신탁·일임 계좌 등 전 업권 계좌 모두 포함

2 해외주식 등에 포함되는 상품: 해외주식(해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DR, ETF 및 ETN), 해외주식대체자산(국내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해외투자 ETF 및 ETN, 집합투자재산의 60%이상을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 해외주식형 펀드 등 상품의 자동매수 설정으로 인한 매수 건도 순매수 금액에 포함되어 세제혜택이 축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위험등급 : **2등급[높은위험]**

- 일반주식 : **2등급(높은위험)**

- 투자(주의/경고/위험)종목, 관리종목 : **1등급(매우높은위험)**

위험등급의 의미: 당사는 상품의 위험등급을 1등급(매우높은위험)에서 6등급(매우낮은위험)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본 상품은 해외주식 매도 자금으로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등급(높은위험)에 해당됩니다. (단, 국내주식 거래 시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종목 및 관리 종목은 1등급(매우높은위험)상품에 해당됩니다.)

위험등급의 유의사항: 이 상품은 투자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시장평균 수익보다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하며, 이를 위해 손실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단, 주식 거래 시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종목 및 관리 종목의 경우, 투자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매우 높은 투자수익률을 기대하며 이를 위해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투자자 성향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상품 투자위험 등급	위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위험도	매우 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 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 낮은위험
유동성위험		중도매도(환매불가) []		중도매도(환매)시 비용발생 []		중도매도(환매)가능 [○]	

□ 유의사항

- 천재지변·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매매의 집행, 매매대금의 수수 및 예탁, 보관의 지연 또는 불능의 경우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사가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 각 증권사별 1인 1계좌 개설 가능하나, 납입한도는 전 증권사 계좌의 한도를 합산하여 5천만원으로 제한되오니 한도 설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주식 배당(현금,주식), 무상 등 권리 처리를 위해 근거계좌 지정이 필요하며, 국내시장 복귀계좌로 해외주식을 출고한 첫번째 계좌가 근거계좌로 자동 설정됩니다. 근거계좌는 국내시장복귀계좌 폐쇄시까지 계좌폐쇄 및 해외증권거래 해지 업무가 제한됩니다.
- 이 계좌는 해외주식 매수가 불가한 계좌입니다. 외화 현금으로 해외주식 등 매수하기 위해서는 동일명의 일반 위탁계좌로 이체출금하여 매수해야 합니다.
- 주식 보유 시 발생하는 권리 공매도는 불가하며, 국내주식 유상청약의 경우 계좌 내 금전으로만 청약 가능합니다.
- 국내시장복귀계좌에 입고된 해외주식에서 배당(현금,주식), 합병 등 권리가 발생한 경우 계좌 내에서 운용이 불가하며, 유상청약, 매수청구 등 일부 권리의 처리 및 신청이 국내시장복귀계좌에서 불가합니다.
- 이 계좌는 원화 입금, 국내주식 입출고(신주인수권증서에 한하여 출고 가능), 공모주청약, ELS청약 등 불가합니다.
- 이 상품은 투자세제지원을 위한 한시적 상품으로,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 또는 제도개정 등에 따라 요건 및 투자가능상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민원·상담·분쟁조정 연락처

문의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44-5000), 인터넷 홈페이지(securities.koreainvestment.com) 내 고객의 소리(이용안내 > 고객센터/FAQ > 고객의 소리), 본사 민원 담당 부서(02-3276-4334)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http://www.fcsc.kr>) 또는 대표번호(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II. 국내시장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설명서

당사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을 1등급(매우높은위험)에서 6등급(매우낮은위험)까지 분류하고 있으며, **본 상품은 2등급(높은위험)에 해당합니다.** 주식 거래 시 매매제도 및 위험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를 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내시장복귀계좌 개요 및 특성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시장복귀계좌(RIA)는 개인투자자가 2025.12.23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1년간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계좌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 고객만 신청 가능합니다. (내국민대우외국인 및 외국인은 불가능)
납입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증권사별 1인 1계좌로 개설 가능하며, 총 납입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투자자가 5천만원 이내 범위에서 납입한도를 사전에 정하여 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관리되며,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도 전 증권사 계좌의 한도를 합산하여 5천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최소 500만원부터 설정 가능하며, 1만원 단위로 감액 또는 증액 가능합니다.

2. 국내시장복귀계좌 상품 설명

출납/환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시장복귀계좌는 원화 입금이 불가하나, 외화입금은 당사이체 입금만 가능하고 외화출금은 당사타사이체 출금이 가능하며, 계좌주 동일명의로만 가능합니다. - 외화입금은 해외주식 권리,배당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납부 등 부득이한 경우 입금 가능합니다. 해외주식 매도자금이 결제되는 날 원화로 자동환전되며, 환전된 날을 납입일로 합니다. 해당 납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인출이 가능하며, 납입 1년 내 납입금액의 인출이 있을 시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공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출 가능 여부는 납입일 단위로 판단하며, 현재 국내시장복귀계좌 내 원화자산 잔고*가 납입누적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 인출은 가능합니다. * 원화자산 잔고 : 주식·전일 증가, 펀드·당일 기준가 초과분 인출 가능 금액은 현재 보유 중인 국내주식 및 펀드평가금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펀드평가금액에 적용되는 기준가 미수신 시 출금가능금액 산출 불가로 출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매도자금이 원화로 자동환전되며, 국내시장복귀계좌 계좌 내 외화는 실시간 직접환전은 불가합니다.
-------	--------------------------------------------------------------------------------------------------------------------------------------------------------------------------------------------------------------------------------------------------------------------------------------------------------------------------------------------------------------------------------------------------------------------------------------------------------------------------------------------------------------------------------------------------------------------------------------------------------------------------------------------------------------------------------

<p>해외주식 입고/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고대상 해외주식 : 2025.12.23까지 보유한 해외주식(해외상장ETF포함, 현지보관통화 대상 국가 제외, '25.12.23 이후 현지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 입고 종목 제외) - 입고가능한 해외주식 산식 : MIN[25.12.23 기준 보유(대금결제 완료 기준) 해외주식의 수량, 국내시장복귀계좌로 입고 신청한 해외주식 수량] • 입고대상 해외주식 일 경우 설정한 납입한도와 무관하게 입고 가능합니다. • 소수점 주식은 입고 불가하며, 정수로 전환된 온주로만 입고 가능합니다. • 국내시장복귀계좌는 해외주식 타사대체입고가 불가하여 해외주식거래신청이 되어 있는 일반 위탁계좌로 입고 후 국내시장복귀계좌로 당사이체출고 처리해야 합니다. • 타 증권사로부터 출고된 해외주식은 '25.12.23(결제일) 이전 취득한 해외주식에 한정하여 국내시장복귀계좌로 입고할 수 있습니다. 매수일자가 확인되지 않을 시 입고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시장복귀계좌에 입고된 해외주식에 대하여 매도 의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출고 가능합니다. • 매도한도 초과로 국내시장복귀계좌에서 매도하지 못한 해외주식은 일반계좌로 자유롭게 출고 가능합니다.
<p>해외주식 매도/결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시장복귀계좌에서는 해외주식 매수가 불가하며 입고된 해외주식 매도만 가능합니다. • 국내시장복귀계좌에 입고된 해외주식은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 권리 선반영 시 기준가가 없거나 선반영 전의 기준으로 계산된 종목일 경우 실제 매도주문 가능한도에 반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대금결제 시 원화로 자동 환전 됩니다. • 매도가능금액은 납입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매도가능금액은 '매도주문 전일 종가 X 주문일의 최고고시환율' 로 계산됩니다. 매도금액이 납입한도를 초과할 경우 주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예약주문의 경우 납입한도 초과로 인해 발송 시점에 주문이 거부될 수 있으니 주문 입력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도대금 입금시간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현지 은행 및 한국 예탁결제원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외국과의 시차, 송금 및 수령 등에 소요되는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의 사정에 따라 매도대금의 입금이 지연될 수 있으며 배당금, 배당주 등도 당사 국내시장복귀계좌로의 입금, 입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OTC(장외시장)주문의 경우 현지 결제 참여자 및 결제참여기관 사정으로 결제 지연 및 취소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국내시장 복귀계좌 내 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시장복귀계좌 납입금은 해외주식 매도대금으로 한정됩니다. • 투자대상자산은 국내상장주식, 국내주식형펀드(ETF포함), 예탁금에 한정되며, 시행령, 제도 개정, 당사의 반영일정 등에 따라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가능종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국내상장주식 :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DR제외) - 국내주식형펀드 : 설정·설립 1개월이 경과한 펀드로서 집합투자재산의 80%이상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단, 해외주식 및 해외주식대체자산이 편입되지 않을 것 • 국내주식은 신주인수권증서에 한하여 출고 가능하며, 입고는 불가합니다.
<p>권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배당(현금주식), 무상, 기업분할은 국내시장복귀계좌에 지급하더라도 운용이 불가하며 권리 지급 시 근거계좌로 처리됩니다. •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합병, 종목교환, 전환 등 기존 주식의 출고와 함께 새로운 주식 또는 현금이 지급될 경우 국내시장복귀계좌에서 운용이 불가합니다. • 국내시장복귀계좌에서 권리로 입금된 외화금액은 계좌 내에서 운용이 불가하오니, 다른 계좌로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시장복귀계좌에서 외화 예수금이 수반되는 워런트 청약이 불가하며, 이에 따라 워런트 증권 또는 신주인수권은 근거계좌로 지급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시장복귀계좌에서 해외주식의 매수청구권, 공개매수 등 일부 권리의 신청이 제한됩니다. • 국내시장복귀계좌에서 해외주식의 권리 행사가 제한된 경우 해당 해외주식을 동일명의 일반 위탁계좌로 출고 후 신청 가능합니다. • DR 보관수수료, 미국 Section871(m) 세법 규정에 따른 현지세금 등 외화금액을 출금하는 경우 국내시장복귀계좌에서 출금되며, 국내시장복귀계좌가 해지 및 계좌폐쇄 된 경우에는 근거계좌에서 출금됩니다.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주식매도 및 국내주식 매수/매도 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일반 위탁계좌의 수수료율에 따르니 각 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좌보유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국내시장복귀계좌가 있는 경우, 국내시장복귀계좌에서 납입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금을 인출하여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공제받은 세제 혜택은 유지됩니다. - 부득이한 사유 : 계좌보유자의 사망, 인출일 전 3개월 이내에 천재지변,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발생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주식 시세 및 외화증권거래 신청이 불가합니다. • 해외주식 배당(현금,주식), 무상 등 권리 처리를 위해 근거계좌 지정이 필요하며, 국내시장복귀계좌로 해외주식을 출고한 첫번째 계좌가 근거계좌로 자동 설정됩니다. 근거계좌는 국내시장복귀계좌 폐쇄시까지 계좌폐쇄 및 해외증권거래 해지 업무가 제한됩니다. • 과세 특례에 따른 사항 외 미국 납세자 제한, 권리 등 해외주식 관련 자세한 사항은 외화증권거래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주식의 권리(배당 등) 및 해외주식의 권리(합병 의제배당으로 인한 양도소득인 경우 제외)로 원화 제세금을 원천징수 할 경우 원화 예수금이 제세금 금액보다 적으면 국내시장복귀계좌에서 원화미수금이 발생하오니 미수금발생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미수금에 대한 연체로는 다른 계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과세 특례에 관한 사항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주식 매도 시점에 따라 세제 혜택이 차등 부여됩니다. - '26년 5월까지 매도 100%, '26년 6월~7월 매도 80%, '26년 8월~12월 매도 50% • 납입 1년 내 인출이 없어야 하기에 '27.5월 양도세 신고 시점 이전에 중도 인출 시 공제 신청 불가합니다. (납입 1년이 경과한 금액과 납입 누적액을 초과하는 초과분 인출은 허용) • 반면, '27.5월에는 인출 사실이 없으나, '26년 하반기에 납입한 금액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인출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됩니다. (투자자가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을 신고·납부) • 납입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금액을 일부 인출 시 전액해지로 간주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금액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금액은 국내시장복귀계좌 내에서의 해외주식의 매도금액과 국내시장복귀계좌를 제외한 다른 모든 계좌*에서의 해외주식 및 해외주식대체자산의 매수·매도금액을 종합 고려하여 산출됩니다. - 국내시장복귀계좌를 제외한 다른 모든 계좌: 일반위탁계좌, 연금저축계좌, ISA계좌, IRP계좌, DC계좌, 신탁·일임계좌 등 모두 포함 • 국내시장복귀계좌를 제외한 다른 모든 계좌에서 해외주식 및 해외주식대체자산의 매수·매도금액은 2026년 중 거래 시점에 따라 금액이 반영되는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26.1월~5월까지 순매수금액의 100%반영, '26.6월~7월 순매수금액의 80%반영, '26.8월~12월 순매수금액의 50%반영 - 국내시장복귀계좌의 세제혜택 차감 상품

- ① 해외주식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해외주식, DR, ETF 및 ETN
- ② 해외주식대체자산 : 국내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해외투자 ETF 및 ETN, 집합투자재산의 60%이상을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구분		설명	비고
해외주식		해외시장에 거래되는 주식, DR, ETF 및 ETN (베트남 등 현지보관통화 국가 제외)	양도세 과세대상
해외주식	국내상장 해외ETFETN	해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 또는 다수종목의 가격 수준을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ETFETN	당사 전산 개발 및 제도 개정 등에 따라 해당되는 종목이 달라질 수 있음
대체자산	해외주식형 펀드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설립·설정 1개월이 경과할 것)	

※ 해외주식 및 해외주식대체자산의 매수매도는 결제일 기준으로 적용

• '26년 1월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국내시장복귀계좌를 제외한 다른 모든 계좌에서 결제한 페널티 상품(해외주식 및 해외주식대체자산)의 순매수금액에 비례하여 세제혜택이 축소되며, 순매수금액에 따라 국내시장복귀계좌 양도소득 공제금액이 없을 수 있으니 매매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26년 한해동안 상속 및 증여로 페널티 상품(해외주식 및 해외주식대체자산)을 취득한 것이 있으면, 해당 취득분은 해외주식, 해외주식 대체자산 순매수 내역에 포함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순서는 양도소득 손익통산 → 기본공제 → 국내시장복귀계좌 공제 순으로 계산*하되, 국내시장복귀계좌 공제금액은 손익통산과 기본공제를 적용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계산하여 마지막에 차감합니다.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0-0-1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감면방식은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방식으로 계산

[예시] 각 시점별 해외주식을 다음과 같이 매수·매도한 투자자의 RIA 양도소득 공제금액 계산방법

구분	'26.5월까지	'26.6월~7월	'26.8월~12월
기간별 가중치	100%	80%	50%
RIA내 해외주식 매도 (매도만 가능)	3,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필요경비)	1,000만원	400만원	400만원
(양도소득금액)	2,000만원	600만원	600만원
RIA외 계좌에서의 거래 (매수·매도 모두 가능)		2,000만원	
매수			
매도			1,000만원

공제금액
계산방식
예시

[1단계: RIA 내 해외주식 매도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공제액(조정 전) 계산]

· 해외주식 매도금액 = 3,000만원 X 100% + 1,000만원 X 80% + 1,000만원 X 50% = 4,300만원

· 조정 전 양도소득금액 공제액 = 2,000만원 X 100% + 600만원 X 80% + 600만원 X 50% = 2,780만원

[2단계: RIA 외 계좌에서의 해외주식 등 순매수금액 계산]

· 해외주식 등 순매수금액 = 매수2,000만원 X 80% + 매도 △1,000만원 X 50% = 1,100만원

[3단계: 최종 공제금액(조정 후) 계산]

· 최종 공제액 = 조정 전 공제액 X $(1 - \frac{RIA외 해외주식 순매수금액(음수인 경우,0)}{RIA내 해외주식 매도금액})$

$$= 2,780\text{만원} \times \left(1 - \frac{1,100}{4,300}\right) = 2,069\text{만원}$$

[4단계: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 세액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 RIA 최종 공제액) X 22%
 = (3,200만원 - 250만원 - 2,069만원) X 22% = 193.855만원*

* RIA 공제 적용 전 세액 (3,200만원 - 250만원) X 22% = 649만원 대비 약 455만원 경감

4. 통지

통지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도성립 결과 통지 및 권리 통지 등은 주식거래 및 외화증권거래 통지에 따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의 통지) 회사는 고객의 매매거래 또는 그 밖에 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 (월별 거래현황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거래 또는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 손익내역, 월말잔액, 잔량현황 등의 내용을 다음 달 20일까지 통지합니다. · (반기별 계좌잔액·잔량현황 통지) 회사는 반기 동안 매매거래 및 그 밖에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 계좌의 잔액·잔량현황을 해당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통지합니다. · (수시통지) 회사는 거래인감의 변경, 증권카드의 재발급, 지점, 그 밖의 영업시간 이관·이수 및 통합계좌 에서의 해제 등의 경우에 고객의 미결제약정, 현금 등의 잔액·잔량을 지체없이 통지합니다.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i>고객께서 통지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및 계좌 현황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통지 내용이 알고 있는 바와 상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 고객센터(1544-5000)로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i></p> </div>
------	------------------------------------------------------------------------------------------------------------------------------------------------------------------------------------------------------------------------------------------------------------------------------------------------------------------------------------------------------------------------------------------------------------------------------------------------------------------------------------------------------------------------------------------------------------------------------------------------------------------------------------------------------------------------------------------------------------------------------------------------------------------------------------

5. 기타 유의사항

-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탁금 중 증권매수 미사용 현금 잔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금융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 계좌는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회사와의 위탁매매 또는 매매 계약을 통해 고객이 직접 해당 계좌를 운용합니다.
- 이 계좌는 자본시장법 제72조에 따라 신용공여가 금지됩니다.
- 이 계좌는 국내주식 증거금을 100%로 운용되는 계좌이나 상품의 결제일 차이에 따라 미수 발생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시장복귀계좌 : 원화 입금 불가 계좌)
- 여러 번에 걸쳐 매도금액이 납입된 경우, 1년 경과한 납입금액만 따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계좌는 계좌 단위로 관리되므로 일부 금액이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전체 계좌가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부분적인 세제 혜택 적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당사는 본 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직원으로부터 상품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가입하시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 등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 국내시장복귀계좌는 국내시장복귀계좌 약관이 적용되며, 가입하시기 전 설명서 및 약관 등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설명서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6. 금소법상 자료열람요구권 안내

행사요건	• 고객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8 조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제공 또는 청취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	• 자료의 열람은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을 기재한 서면으로 내접,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열람을 요구한 날부터 6 영업일 이내 열람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는 자료를 10 년(일부 자료는 5 년)동안 보관합니다. • 단, 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열람을 연기,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7. 위법계약의 해지 안내

행사요건	고객은 회사가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 금융상품	고객과 회사간에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상품에 대하여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해지가능기간 및 요구방법	고객이 회사의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달하는 날까지 서면 등의 방법으로 계약의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해지절차	회사는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님께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며 통지 내용(수락 또는 거절과 거절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드립니다.

8. 청약철회권 행사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은 금융소비자의 권리 중 청약철회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대상상품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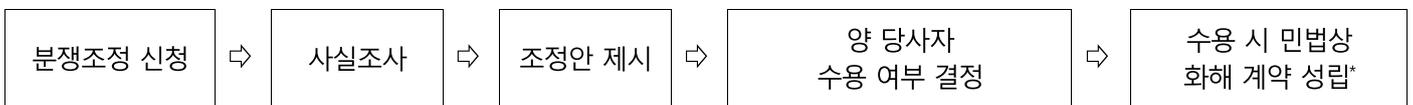
9. 당사 민원처리절차 및 신청방법 안내



* 민원처리결과에 따른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등 외부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처	접수방법	비고
전자민원접수	홈페이지(securities.koreainvestment.com)	이용안내>고객센터/FAQ>고객의 소리
영업점민원창구	서면(민원신청서)	-
본사 민원담당부서	이메일(minwon@koreainvestment.com), 우편, FAX(02-3276-4332)	소비자지원부(02-3276-4334)

10. 외부기관(금융감독원 등) 분쟁조정절차 및 신청방법 안내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수용 시에는 재판상 화해 효력 발생

접수처	연락처	바로 가기(인터넷)
금융투자협회	02-2003-9426	(http://www.kofia.or.kr/wpge/m_77/sub040102.do)
한국거래소	02-1577-2172	(http://sims.krx.co.kr/p/Drct0201/)
금융감독원	1332	e-금융민원센터 링크(http://www.fcsc.kr)(PC)

판매직원	이 상품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과 이 설명서의 내용이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확인사항	한국투자증권 _____ 지점 (☎ _____) 직위: ____ 직원명 : _____ (서명)